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발 명 진 흥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성윤모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발명진흥법 개정에 따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(이하 ‘전략원’) 및 한국 지식재산보호원(이하 ‘보호원’)의 업무와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, 아울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‘분쟁조정위원회’)의 업무 체계도 정비

3. 주요내용

가. 발명진흥법 개정법에 보호원의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표기된 보호원의 법적근거를 민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전환(안 제 9조의11제2호 개정)

나. 전략원의 수익사업 범위 규정(안 제19조의11 신설)

- 1) 개정법이 전략원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
- 2) 전략원이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수익사업 범위를 설정하고, 수익사업을 시작·중단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특허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

다. 보호원의 업무 규정(안 제27조의2 신설)

- 1) 개정법이 보호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

- 2) 영업비밀 보호와 산업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보호원의 업무로 명시하고, 그밖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대업무를 보호원의 업무로 규정

라. 보호원의 수익사업 범위 규정(안 제27조의3 신설)

- 1) 개정 발명진흥법에서 전락원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
- 2)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연구용역, 정보제공과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를 수익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, 보호원이 수익사업을 시작·중단 또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특허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도록 규정

마.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출 수단 확대(안 제22조제7항 개정)

- 1) 당사자 등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한데, 서면에 전자문서도 포함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부재
- 2) 시행령 상의 ‘서면’을 ‘서면(전자문서 포함)’으로 개정
- 3) 전자문서를 통한 의견제출이 가능함을 명시함에 따라 분쟁당사자 및 담당부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집행효율 증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11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한국지식재산보호원

제19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11(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등) ①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법 제55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지식재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전략 지원 사업
2. 해외 국가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
3. 국가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위한 생태계 활성화 지원 사업
4. 지식재산 전략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, 출판, 행사, 홍보 사업

②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요 사항(사업 및 업무내용)의 변경, 중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22조제7항 중 “서면”을 “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) 법 제55조의3제1항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영업비밀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
2. 산업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한 업무 지원
3. 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부대 업무

제27조의3(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수익사업 등) 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법 제5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지식재산 보호 관련 연구용역
2.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정보 제공
3. 지식재산 보호 관련 교육, 출판 및 행사
4.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

②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요 사항(사업 및 업무내용)의 변경, 중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의11(상담센터 운영의 위탁) 법 제26조의2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.	제9조의11(상담센터 운영의 위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<u>한국지식재산보호원</u>	2. <u>한국지식재산보호원</u>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19조의11(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등) ①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법 제55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</u>
	1. <u>지식재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전략 지원 사업</u>
	2. <u>해외 국가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</u>
	3. <u>국가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위한 생태계 활성화 지원 사업</u>
	4. <u>지식재산 전략 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, 출판, 행사,</u>

제22조(조정절차 등) ① ~ ⑥ (생략)

⑦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,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⑧ (생략)

<신 설>

홍보 사업

②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요 사항(사업 및 업무내용)의 변경, 중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22조(조정절차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-----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---.

⑧ (현행과 같음)

제27조의2(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) 법 제55조의3제1항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영업비밀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
2. 산업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한 업무 지원
3. 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부대 업무

<신 설>

제27조의3(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

수익사업 등) ① 한국지식재산
보호원은 법 제55조의3제2항에
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
할 수 있다.

1. 지식재산 보호 관련 연구용
역

2.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정보 제
공

3. 지식재산 보호 관련 교육, 출
판 및 행사

4.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

②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제1
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하거
나 중요사항(사업 및 업무내용)
의 변경, 중단하는 경우에는 미
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
고해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	
연 락 처	042-481-5154